창작물라이선스계약서

박경신

kyungsinpark@korea.ac.kr

강의순서

1. 창작물라이선스계약서의 구조
2. 시나리오표준계약서 (영진위)
3. 웹툰연재샘플계약서 검토 (전 디콘위원장)
4. 출판권 및 공중송신권 설정샘플계약서 검토
5. 작가회의 원고청탁계약서 검토

라이센스계약-1

- 저작권(copyright)/특허(patent)/상표(trademark)/영업비밀/(trade secret, “know-how”) 등 지적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의 사용허가 cf. 프랜차이즈
- 라이센서(licensor)와 라이센시(licensee)
- 라이센스의 범위 = 대상 지적재산권 + 그 지적재산권의 사용범위 (시간, 장소, 방법)
- 라이센스계약의 필요 여부 –
  - 특허: 등록?
  - 저작권(창작시점 + Berne협약): 표현물? 공정사용?
  - 상표: 등록여부 cf. 부정경쟁방지법, 공정사용?
  - 영업비밀 reverse engineering 가능? 합법적 입수? Cf. knowingly
  - 일반: IP권 자체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그 결과물 내지는 표창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할땐 라이센스 불필요

독점권

독점? 비독점? → 라이센서 자신에게도 적용됨

- **If 독점,**
  - 독점권 적용대상의 범위 – 1) 작품 2) 이용방법
  -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영업지역 내에서의 권리
  - 라이센시가 영업지역 밖에서 갖는 권리
- If 독점, S'시장상실의 위험,
  - 미니멈개런티 (MG): 문화계에서는 보통 사전지급
  - 영업지역(territory)
  - 영업의무 - 홍보비용
  - 영업기간(at will/term; length) v. 2차저작물작성기간

라이센스계약-2

- 저작권라이센스의 대상
  - “모든 저작권” – 2차저작물 포함?
-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- 표시되어야 이전.
  - 원작 = 스토리 + 등장인물 + 표현방식
  - 리메이크 = 동일 스토리 + 동일 등장인물
  - 속편 = 동일 등장인물
  - 원작의 저작권은 리메이크권과 속편을 모두 포함하는데 원작의 저작권 양도시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가? → 정의와 범주의 반비례성

라이센스계약-3

- 로열티 = 저작권료 (이중조세방지협약)
- 미니멈개런티와 러닝로열티; MG의 원래 의미
- 러닝로열티 → (1) 보고/증빙보관/감사의무; (2) 총수익(gross)과 순수익(net) →매출의 어느 단계? 홍보비 빼고? 유통비 빼고?
- 재라이선스권 : 보통 없음.
- 복제(piracy) 단속의무 – 라이센시/라이센서
- 지적재산권불침해보증, 품질보증 보통 불필요 – 면책및배상
- 위반시 법원명령

공통사항

- 보증, 보증부인
  - 품질보증
  - 지적재산권 불침해 보증
- 상호 손해배상책임 조항: 반드시 필요치는 않음
- 책임제한
- 계약수정: 서면으로만?
- 언어: 계약서는 하나 뿐이다! (“동등한 효력을 갖는다”)
- 양도: 일방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는 내용, 없으면 양도가능 (조건: “불리한 변화” // 조항의 필요성 예) 경쟁업체에서 경우
- 변호사비용: 패자부담.
- 준거법:
- 분쟁해결: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. 중재+중재지 - 법원의 관할, 사법부가 정함. 항소없음.비밀유지.